

대전고등법원 2024. 5. 29 선고 2024나10134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전고등법원 2024. 5. 29 선고 2024나10134 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3. 12. 7 선고 2023가합5022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홍익 법무법인(담당변호사 임성빈)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담당변호사 최영헌)

변론종결 2024. 5. 1.

판결선고 2024. 5. 29.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3. 12. 7. 선고 2023가합50228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D 전 955㎡에 관하여 2021. 5. 1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채무자 주식회사 C,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을 취소한다.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 절차에서 위 법원이 피고에게 배당한 배당금 8,900,260원의 지급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청 청주지방법원 현금출납공무원)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일부 오기를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해당란(제1심 판결문 제2쪽 10행부터 제3쪽 1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7행의 “2021카단51603호”를 “2022카단51603호”로 고쳐 쓰고, 제3쪽 9행의 “E로”를 “E”로 고쳐 쓴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제1심 판단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면서, 원상회복으로서 배당금 지급 채권의 양도 등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다투었다.

제1심은,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다음과 같은 법리에다가, 갑 제7, 9호증, 을 제14, 17, 19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I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악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가. 관련 법리

1)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 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참조).

2)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되는 부동산이 사해행위가 있는 후에 경매 절차에서 매각된 경우에 그 부동산의 평가는 매각된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해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산출된 감정평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3)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인용한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계약(2021. 5. 17.) 당시 원고의 C에 대한 대여원리금은 합계 910,991,780원[= 800,000,000원 + (800,000,000원 × 0.24 × 211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다. 그 밖에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C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로서, 피고에 대한 채무 200,000,000원, H, G에 대한 채무 300,000,000원, M에 대한 채무 60,000,000원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합산하면, 이 사건 계약 당시 C의 채무는 합계 1,470,991,780원(= 910,991,780원 + 200,000,000원 + 300,000,000원 + 60,000,000원)이다[원고는 제1심에서는 C의 L에 대한 채무 375,000,000원도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으나(2023. 8. 31.자 준비서면), 제1심은 그것이 C의 채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원고는 이 법원에서는 L에 대한 채무가 제외됨을 전제로 C의 채무가 합계 1,470,991,780원이라고 주장하였다(2024. 4. 25.자 준비서면)].

2) C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청주시 청원구 D 전 955㎡), 청주시 청원구 J 임야 183㎡ 및 K 전 1,051㎡(이하 '이 사건 건물 부지'라 한다)와 그 지상 미등기 건물 2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갑 제9호증, 을 제14호증). C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 부지에 관하여는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1,2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등기일 2020. 10. 21.)와 L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37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등기일 2020. 10. 21.)를 각 마친 상태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H, G를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3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등기일 2021. 1. 11.)와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260,000,0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등기일 2021. 6. 3.)를 각 마친 상태였다.

3) 이 사건 건물 부지 및 건물에 관하여는 청주지방법원 N, O(중복)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그 사건에서 이 사건 건물 부지는 618,234,000원으로, 이 사건 건물은 1,169,101,440원으로 각 감정평가되었다(기준 시점 2022. 8. 18., 을 제19호증). 한편, 이 사건 토지, 건물 부지 및 건물에 관하여는 청주지방법원 P, Q, R(병합) 부동산임의경매도 진행되었는데, 그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는 411,605,000원, 이 사건 건물 부지는 531,854,000원, 이 사건 건물은 1,096,032,600원(= 2,039,491,600원 - 411,605,000원 - 531,854,000원)으로 각 감정평가되었다(기준 시점 2018. 7. 6., 이 법원의 청주지방법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 및 참고자료로 제출된 갑 제14, 15호증).

4) 결국 이 사건 계약 당시 C의 소극재산은 최대 1,470,991,780원(피고는 C의 일부 채무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보다 적다고 주장하나, 그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이다. 반면, 그 무렵 C의 적극재산인 이 사건 토지, 건물 부지 및 건물의 시가(경매 절차에서의 감정평가액)는 합계 2,039,491,600원[청주지방법원 P, Q, R(병합) 부동산임의경매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또는 합계 2,198,940,440원[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위 부동산임의경매의 감정평가액(411,605,000원)을 적용하고, 이 사건 건물 부지(618,234,000원) 및 건물(1,169,101,440원)에 관하여는 청주지방법원 N, O(중복) 부동산임의경매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이며, 여기에 예금 채권 2,379,975원(제1심의 I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을 합산하면, C의 적극재산은 소극재산을 현저히 초과한다[제1심의 청주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와 S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당시 C는 봉고III 1톤 차량(차량번호 1 생략) 및 2,355원의 예금 채권도 가지고 있었음이 인정되나, 피고가 이를 C의 재산으로 주장한 바 없으므로, 이를 추가로 고려하지는 아니한다].

5)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H, G를, 이 사건 건물 부지에 관하여는 원고를 각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이처럼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어 그 물상담보에 제공된 가액에서 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C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가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 부지에 관한 L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보다 후순위로서 물상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으므로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처럼 C가 물상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가액과 그에 상응하는 C의 채무액을 대등액에서 공제하면 앞서 본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동일하게 감액되므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현저히 초과한다는 결론은 변함이 없다.

6) 원고는 위 각 부동산임의경매의 감정평가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부동산이 매각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C의 채무초과 상태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관련 법리에서 본 것처럼,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되는 부동산이 사해행위가 있는 후에 경매 절차에서 매각된 경우에 그 부동산의 평가는 매각된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해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산출된 감정평가액이 시가를 반영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상당한 적극재산을 가진 채무자가 담보권의 설정 등 통상적인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사후적인 사정으로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부동산이 매각됨으로써 일부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면, 종전에 한 법률행위가 모두 사해행위로 취급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위 청주지방법원 P, Q, R(병합)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유치권이 신고된 바 있더라도, 유치권의 존재가 인정된 바 없으므로, 유치권 신고 사실만으로 부동산의 가액을 달리 평가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7) 나아가, 앞서 본 것처럼, C는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 부지 및 건물 등 적극재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여러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물상담보를 설정해 주었고, 원고는 그중 가액이 가장 큰 이 사건 건물 부지에 관하여 최선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받은 점, 반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H, G의 근저당권설정등기보다 후순위였던 점, 그로 인해 원고는 원리금의 대부분(1,024,702,492원)을 배당받은 반면(을 제17호증), 피고는 200,000,000원의 채권 중 8,900,260원만을 배당받은 점(갑 제7호증),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가 C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면서도 C와 통모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는 점(만약 C가 피고와 통모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앞서 보았듯이 원고에게는 원리금의 대부분이 배당되게

하면서 피고에게는 채권액의 5%에도 미치지 아니하는 적은 금원만이 배당되게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등을 종합하면,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것이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유발하려는 행위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흥주, 판사 모성준, 판사 송석봉